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45
----------	------

제출연월일: 2022. 1.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신설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경비의 지원)”을 “(보조금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u>경비의 지원</u>) <신 설></p> <p><신 설></p> <p>(생 략)</p>	<p>제17조(<u>보조금 등의 지원</u>) ① <u>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u></p> <p>③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보조금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2022년 보조금 집행 결과 및 ESG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차후년도 예산 결정 예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연도						
세입	소계(a)	-	-	-	-	-	-
세출	○ 보조금	990,000	-	-	-	-	990,000
	소계(b)	990,000	-	-	-	-	990,000
□ 총 비용(a-b)		-990,000	-	-	-	-	-99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연도						
국 비		-	-	-	-	-	-
시 비		-	-	-	-	-	-
구 비		990,000	-	-	-	-	990,000
민 간		-	-	-	-	-	-
기 타(지방채, 기금, 예치금 회수 등)		-	-	-	-	-	-
합 계		990,000	-	-	-	-	990,000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성자: 지속발전과 최재호(연락처 2286-6587)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용

- ESG 공모사업 비용
 - E(환경)분야: 700,000천원
 - S(사회)분야: 200,000천원
 - G(거버넌스)분야: 190,000천원

< 관 계 법 규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보조대상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경우
3.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